

##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Gas Cooling and Heating Appliances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14년 10월 17일

산업통상자원부 승인 : 2014년 11월 17일



##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

**위 원 장**

이 수 경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

오 신 규 : 호서대학교 교수

**당 연 직**

조 웅 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

박 기 동 :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

**고압가스분야**

김 진 석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

김 청 균 : 홍익대학교 교수

윤 기 봉 : 중앙대학교 교수

하 동 명 : 세명대학교 교수

김 창 기 :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

정 태 용 : 국민대학교 교수

안 병 성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

윤 재 건 : 한성대학교 교수

백 종 배 : 한국교통대학교 교수

장 석 응 : 에스아이피엔씨(주) 회장

이 기 연 : 한국LPG산업협회 전무

장 기 현 : (주)귀뚜라미 전무

**도시가스분야**

김 광 섭 : 대륜 E&S 상무

오 신 규 : 호서대학교 교수

이 수 경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

고 재 육 : 광운대학교 교수

문 일 : 연세대학교 교수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의2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KGS Code 제·개정 이력

| KGS Code 제·개정 이력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목코드번호           | KGS AB134 2014         |
| 코 드 명            |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|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일반사항 .....            | 1  |
| 1.1 적용범위 .....           | 1  |
| 1.2 기준의 효력 .....         | 1  |
| 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      | 2  |
|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.....  | 2  |
|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..... | 2  |
| 1.4 용어정의 .....           | 2  |
| 1.5 기준의 준용 .....         | 3  |
| 2. 제조시설기준 .....          | 3  |
| 2.1 제조설비 .....           | 3  |
| 2.2 검사설비 .....           | 3  |
| 3. 제조기술기준 .....          | 4  |
| 3.1 재료 .....             | 4  |
| 3.2 구조 및 치수 .....        | 8  |
| 3.2.1 냉난방기 본체 .....      | 8  |
| 3.2.2 연소설비 .....         | 8  |
| 3.2.3 전기설비 .....         | 9  |
| 3.2.4 배관설비 .....         | 9  |
| 3.3 장치 .....             | 9  |
| 3.3.1 정전안전장치 .....       | 9  |
| 3.3.2 역풍방지장치 .....       | 9  |
| 3.3.3 소화안전장치 .....       | 9  |
| 3.3.4 그 밖의 장치 .....      | 10 |
| 3.4 성능 .....             | 10 |
| 3.4.1 제품 성능 .....        | 10 |
| 3.4.2 재료 성능(내용 없음) ..... | 11 |
| 3.4.3 작동 성능 .....        | 12 |
| 3.5 열처리(내용 없음) .....     | 12 |
| 3.6 표시 .....             | 12 |
| 3.6.1 제품표시 .....         | 12 |

|  |    |
|--|----|
| 3.6.2 합격표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3 |
| 3.6.3 설명서 첨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3 |
| 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4.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| 4.1 검사종류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|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| 14 |
|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| 14 |
|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 .....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2.1 심사 신청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2.2 심사 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2.3 판정위원회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6 |
| 4.3 검사항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|
|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| 16 |
|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| 17 |
| 4.4 검사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
|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| 19 |
|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| 19 |
| 4.5 그 밖의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| 22 |
| 4.5.1 수입품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4.5.2 검사일부 생략 .....                    | 22 |
|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(해당 없음) .....        | 22 |
| 4.5.4 세부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부록 A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..... | 23 |

##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Gas Cooling and Heating Appliances)

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1.1.1 이 기준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4 제10호 및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 중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용 가스냉난방기(흡수식 냉동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하나의 유닛에서 냉수 및 온수를 각각 또는 동시에 공급하는 냉방용 연소기 및 냉·난방용 연소기를 말한다. 이하 “냉난방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(1) 전가스소비량이 232.6 kW(20만 kcal/h) 이하인 것
- (2) 가스사용압력이 3.3 kPa 이하인 것
- (3) 냉난방기 장치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여 운전되는 것

1.1.2 규칙 별표 7 제5호나목에 따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는 연소기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용접 및 절단 등에 사용하는 가스 토치
- (2) 주물사 건조로, 인쇄잉크 건조로, 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하는 건조로용 연소기
- (3) 금속열처리로, 유리 및 도자기로, 분위기ガ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
- (4) 금속용융, 유리용융 등에 사용하는 용융로용 연소기
- (5) 내용적 100 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
- (6)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기

#### 1.2 기준의 효력

1.2.1 이 기준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고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(안전번호 제2014-9호, 2014년 10월 17일)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589호, 2014년 11월 17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1.2.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규칙 별표 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규칙 별표 7 제5호가목에 따라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냉난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09.5.15>

###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<신설 12.6.26>

규칙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“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” 이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세기준을 말한다.

## 1.4 용어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KGS-AB931:2008(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및 KS B 6271(흡수식 냉동기)에 따른다.

**1.4.1 “정기품질검사”** 란 생산단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2 “상시샘플검사”** 란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3 “수시품질검사”** 란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4 “공정확인심사”** 란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5 “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”** 란 제품의 설계·제조 및 자체검사 등 냉난방기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6 “형식”** 이란 구조·재료·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.

**1.4.7 “공정검사”** 란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.

**1.4.8 “재생기”** 란 냉난방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의 연소열로 직접 흡수액을 가열하여, 냉매증기를 발생하는 동시에 흡수액의 농도를 높이는 기기를 말한다.

**1.4.9 “연소설비”** 란 냉난방기의 조작밸브로부터 버너까지에 이르는 배관·콕 및 연소안전장치 등을 말한다.

**1.4.10 “안전장치”** 란 냉난방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기기류 등을 말한다.

## 1.5 기준의 준용

1.5.1 이 기준 외에 냉난방기의 재료, 구조 및 치수, 성능 그 밖에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.

1.5.2 그 밖의 냉난방기의 제조기술기준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른다.

1.5.3 냉난방기에 사용하는 버너에 대하여는 KGS-AB931:2008(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에 따른다.

## 2. 제조시설기준

### 2.1 제조설비

냉난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제조기준에 따라 냉난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맞는 제조설비를 갖춘다. 다만, 혀기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(1) 구명가공기 · 프레스 · 관굽힘기 · 주물가공설비
- (2)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
- (3) 초음파세척설비(냉난방기용 콕 및 거버너만을 말한다)
- (4) 냉난방기 조립을 위한 가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및 동력용조립지그 · 공구

### 2.2 검사설비

2.2.1 냉난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 ·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춘다.

2.2.1.1 검사설비의 종류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.

#### 2.2.1.1.1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의 종류

- (1) 버너어캘리퍼스 · 마이크로메타 · 나사계이지 등  
치수측정설비
- (2) 표면온도계
- (3)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
- (4) 연소성시험설비

- (5) 기밀시험설비
- (6) 절연저항측정기 및 내전압시험기
- (7) 풍속계

#### **2.2.1.1.2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의 종류**

- (1) 액화석유가스액 또는 도시가스침적시험설비
- (2) 내압시험설비
- (3) 기밀시험설비
- (4)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
- (5) 내구시험설비
- (6) 시험가스공급설비
- (7) 절연저항측정기 · 내전압시험기
- (8) 가스소비량측정설비
- (9) 대기압계
- (10) 전압조정기 및 소비전력측정설비
- (11) 진동시험기
- (12) 열효율측정설비
- (13) 그 밖에 필요한 검사설비 및 기구

**2.2.1.2** 검사설비의 처리능력은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것으로 한다.

**2.2.2** 2.2.1에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시험 · 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관과 설계단계검사 항목에 필요한 시험 ·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.2.1에 따른 검사설비 중 해당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- (1) 고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“한국가스안전공사” 라 한다)
- (2) 고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(이하 “검사기관” 이라 한다)
- (3)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해당 공인시험 · 검사기관

### **3. 제조기술기준**

#### **3.1 재료**

냉난방기의 재료는 그 냉난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3.1.1** 버너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품은 운전 중 버너가 받는 기계적, 화학적, 열적 응력에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3.1.2 내식성이 없는 강재 등은 도금, 페인트, 범랑 등으로 표면처리를 한다.

3.1.3 온도가 300 °C 이상으로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관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

3.1.4 배관에 사용하는 재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#### 3.1.4.1 배관 두께

3.1.4.1.1 내경에 대한 외경의 비가 1.5 이하인 경우 ( $P \leq 100 \sigma_a \eta / 2.6$ )

$$t = \frac{PD^\circ}{2\sigma_a \eta + 0.8P} \dots\dots\dots (3.1)$$

3.1.4.1.2 내경에 대한 외경의 비가 1.5를 초과한 경우 ( $P > 100 \sigma_a \eta / 2.6$ )

$$t = \frac{D^\circ}{2} \left( 1 - \sqrt{\frac{\sigma_a \eta - P}{\sigma_a \eta + P}} \right) \dots\dots\dots (3.2)$$

식 (2.1)과 식 (2.2)에서

$t$  : 배관의 최소두께(mm)

$D^\circ$  : 배관의 외경(mm)

$P$  : 상용압력(MPa)

$\sigma_a$  : KS B 6733(압력용기 기반규격) 중 부표의 하용응력에 규정된 재료의 인장강도(N/mm<sup>2</sup>)

$\eta$  : 용접이음매의 효율로써, 표 3.1.4.1.2의 용접이음매의 종류(같은 표 "(1)" 및 "(2)"의 경우에 가운데 란의 값은 용접부(용착 금속 부분 및 용접에 따른 열 영향으로 인하여 재질에 변화를 받는 모재의 부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전 길이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 용접부 부분의 비율)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열거한 값에 길이 이음매는 1, 원주이음매는 2를 곱한 값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)으로 한다.

표 3.1.4.1.2 용접이음매의 종류별 효율

| 이 음 매 의 종 류 |   | 이음매의<br>효<br>율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        | 맞대기 양면 용접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 할 수 있는 맞대기 한면 용접 이음매 | 1<br>0.2 이상 1 미만<br>0.2 미만 |
| (2)         |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 한면 용접 이음매로써 받침쇠를 남기는 것             | 1<br>0.2 이상 1 미만<br>0.2 미만 |
| (3)         | 위 (2)의 것 외의 맞대기 한면 용접이음매                        | 0.60                       |
| (4)         | 충성동체의 충성재 또는 외통의 맞대기 한면 용접 이음매                  | 0.65                       |
| (5)         | 양면 전두께 필렛겹치기 용접이음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5                       |
| (6)         | 플러그 용접을 하는 한면 전두께 필렛겹치기 용접이음매                   | 0.50                       |
| (7)         | 플러그 용접을 하지 않는 한면 전두께 필렛겹치기 용접 이음매               | 0.45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1.4.2 배관 재료

냉난방기에 사용하는 배관·관이음매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- (1) 온도 120 °C 이상에서 사용하는 배관
- (2) 강제냉각방식에서 -5 °C 이하로 유지되는 배관

#### 3.1.4.2.1 고압배관 재료

고압가스(액상의 액화석유가스 및 상용의 온도 또는 35 °C에서 압력이 1 MPa 이상이 되는 기상의 액화석유가스 이하 같다)가 통하는 배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(이하 “내압부분”이라 한다)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조건에 따라 다음의 규격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한다.

##### (1) 관재료

- (1-1) KS D 3562(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)
- (1-2) KS D 5301(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)중 인탈산동
- (1-3) KS D 3563(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)
- (1-4) KS D 3564(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)
- (1-5) KS D 3569(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)
- (1-6) KS D 3570(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)
- (1-7) KS D 3572(보일러 ·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)
- (1-8) KS D 3573(배관용 합금강 강관)
- (1-9) KS D 3575(고압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)
- (1-10) KS D 3576(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)
- (1-11) KS D 3577(보일러 ·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)
- (1-12) (1-1)부터 (1-11)까지의 관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으로서 KS표시 허가품

##### (2) 형·판·대재

- (2-1) KS D 3503(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)
- (2-2) KS D 3560(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판)
- (2-3) KS D 3515(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)
- (2-4) KS D 3521(압력 용기용 강판)
- (2-5) KS D 3540(중 · 상온압력용기용 탄소 강판)
- (2-6) KS D 3752(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)

##### (3) 주조품·단조품

- (3-1) KS D 3710(탄소강 단강품)
- (3-2) KS D 4101(탄소강 주강품)
- (3-3) KS D 4106(용접 구조용 주강품)
- (3-4) KS D 4302(구상 흑연 주철물)
- (3-5) KS D ISO 5922(가단 주철물) 중 흑심가단 주철물
- (3-6) KS D 5101(동 및 동합금봉)중 단조용황동
- (3-7) KS D 6024(청동 주물) <개정 14.11.17>
- (3-8) KS B 6733 부속서 5.A(덕타일 철주조품)

(3-9) KS B 6733 부속서 5.B(밸리어블 철주조품)

#### (4) 봉재

(4-1) KS D 3503(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)

(4-2) KS D 3526(마봉강용 일반 강재)

(4-3) KS D 3592(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)

(4-4) KS D 3752(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)

#### 3.1.4.2.2 재료의 사용제한

3.1.4.2.1에도 불구하고 고압배관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##### (1) 내압부분 사용제한

(1-1) 탄소함유량이 0.35% 이상의 것으로 용접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KS D 3710(탄소강 단강 품)과 같이 탄소함유량의 규정이 없는 재료는 탄소함유량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.

(1-2) KS D 3507 (배관용 탄소 강관)

(1-3) KS D 3583 (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)

(1-4) KS D 4301 (회 주철품)

##### (2) 탄소강 강재의 사용제한

(2-1) KS D 3503 (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) 및 KS D 3515(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)의 1종 A, 2종 A 및 3종 A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(2-1-1) 설계압력이 1.6 MPa을 초과하는 내압부분

(2-1-2) 설계압력이 1 MPa을 초과하는 길이 이음매를 갖는 관 또는 관이음쇠

(2-1-3) 두께 16 mm를 초과하는 내압부분

(2-2) KS D 3515 (용접 구조 압연 강재)[1종 A, 2종 A 및 3종 A를 제외한다]는 설계압력이 3 MPa을 초과하는 배관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##### (3) 주철품의 사용제한

(3-1) KS D 4302 (구상 흑연 주철품)의 3종, 4종 및 5종 KS D 4303(흑심 가단 주철품)의 1종 및 2종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(3-1-1) 설계압력이 0.2 MPa 이상인 가연성가스의 배관

(3-1-2) 설계압력이 1.6 MPa 이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외의 밸브 및 플랜지

(3-1-3) 설계온도가 0 °C 미만인 배관

(3-2) KS D 4302(구상 흑연 주철품)의 1종 및 2종, KS D 4303(흑심 가단 주철품)의 3종 및 4종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(3-2-1) 설계압력이 1.6 MPa 이상인 밸브 및 플랜지

(3-2-2) 설계압력이 1.1 MPa 이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수송하는 내압부분으로서 밸브 및 플랜지외의 것

(3-2-3) 설계온도가 0 °C 미만인 배관

(3-3) KS B 6231부속서 1의 A(강인주철의 주조품) 및 B(가단 주철 주조품)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(3-3-1) 설계압력이 2.4 MPa 이상인 밸브 및 플랜지

(3-3-2) 설계온도가 -5 °C 미만인 배관

##### (4) 동 및 동합금의 사용제한

(4-1) 외부의 하중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
### 3.1.4.2.3 저압배관 재료

고압가스이외의 가스가 통하는 배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조건에 따라 다음의 규격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한다. 다만 3.1.4.2.1에 따른 고압배관의 재료는 저압배관에 사용할 수 있다.

#### (1) 관재료

(1-1) KS D 3583 (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)

(1-2) KS D 3631 (연료가스용 배관재료기준)

(1-3) KS 표시허가제품인 가스용 폴리에틸렌관. 다만, 지하매몰배관에 한정하고 상용압력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(2) 관이음쇠 재료

(2-1) KS D 3631 (연료가스용 배관재료기준)

## 3.2 구조 및 치수

냉난방기는 그 냉난방기의 안전성 · 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2.1 냉난방기 본체

**3.2.1.1** 냉난방기 본체의 유지 · 보수가 쉽고, 냉수 · 온수 및 냉각수 계통은 충분한 내압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**3.2.1.2** 내부압력이 진공으로 운전되는 경우 기밀한 구조로서 외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**3.2.1.3** 냉난방기는 용기와 직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.

**3.2.1.4** 가스 또는 물의 회전식개폐 콕이나 회전식밸브의 핸들의 열림 방향은 시계바늘 반대방향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열림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다기능의 회전식개폐 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3.2.2 연소설비

**3.2.2.1** 냉난방기의 연소설비는 충격 · 진동 · 하중 및 열 등으로 인한 응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한다.

**3.2.2.2** 냉난방기 본체 및 연소설비의 유지가 쉽고, 연소제어기기의 교환이 쉬운 구조로 한다.

**3.2.2.3** 버너의 연소상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.

**3.2.2.4** 파일럿버너가 있는 냉난방기는 파일럿버너가 점화되지 아니하면 메인버너의 가스통로가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.

**3.2.2.5**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를 부착한 냉난방기는 점화전에 송풍기가 작동하고 송풍기가 정지되면 자동으로 가스통로가 차단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3.2.3 전기설비

**3.2.3.1** 각 전기기기는 공급 표준전압의  $\pm 10\%$  범위에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2.3.2** 냉난방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이상강하 시에 안전측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한다.

**3.2.3.3** 송풍기에는 작동 시 냉난방기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과부하보호장치를 설치한다.

### 3.2.4 배관설비

**3.2.4.1** 메인버너에 대한 가스배관에는 공급압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또는 압력 검출구를 설치한다.

**3.2.4.2** 배관의 누출검사를 위하여 베너직전에 콕 또는 밸브 등을 설치하고, 누출검사 및 베너 연소압력의 측정에 필요한 압력 검출구를 설치한다.

**3.2.4.3** 안전차단밸브에는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.

## 3.3 장치

냉난방기는 그 냉난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장치를 갖춘다.

### 3.3.1 정전안전장치

교류전원으로 가스통로를 개폐하는 냉난방기에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 가스통로를 차단하고, 다시 통전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가스통로가 열리지 아니하거나 재점화되는 정전안전장치를 갖춘다. 다만, 정전시에 파일럿버너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09.5.15>

### 3.3.2 역풍방지장치

배기통연결부가 있는 냉난방기는 역풍이 베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역풍방지장치를 갖춘다.

### 3.3.3 소화안전장치

냉난방기에 설치하는 자외선 방식의 화염검출기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광선을 차단하는 구조이거나, 입사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.

### 3.3.4 그 밖의 장치

#### 3.3.4.1 경보장치

냉난방기에는 다음 안전장치를 구비하고, 각 장치는 장시간 사용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 상상태 발생 시 가스를 차단하고 그 이상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.

- (1) 가스압력스위치
- (2) 공기압력스위치
- (3) 고온재생기 과열방지장치
- (4) 고온재생기 과압방지장치
- (5) 냉수 흐름(flow)스위치 또는 인터로크(Interlock)
- (6) 동결방지장치
- (7) 냉각수 흐름(flow)스위치 또는 인터로크(Interlock)

#### 3.3.4.2 운전상태감시장치

냉난방기에는 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재생기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그 온도계는 장시간 사용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

## 3.4 성능

냉난방기는 그 냉난방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4.1 제품 성능

#### 3.4.1.1 내압 성능

냉난방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른 내압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현지에서 버너 유닛(배관을 포함한다)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완성 후에 내압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.

**3.4.1.1.1** 공급가스압력이 3.3 kPa인 경우에는 5.5 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배관 및 기기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1.2** 공급가스압력이 3.3 kPa 초과 10 kPa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.5배(가스압력조정기의 2차측은 설정압력의 1.5배) 이상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배관 및 기기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1.3** 공급가스압력이 10 kPa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.5배(가스압력조정기 2차측은 설정압력의 1.5배) 이상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배관 및 기기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4.1.2 기밀 성능

냉난방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기밀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현지에서 버너 유닛(배관을 포함한다)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완성 후에 기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기밀 성능의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점화상태에서 누출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**3.4.1.2.1** 공급가스압력이 3.3 kPa인 경우에는 5.5 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고 비누물 등의 발포액으로 시험하여 플랜지 · 나사 등의 접합부로부터 누출이 없거나, 수주케이지의 경우 5분 이상, 압력계의 경우는 24분 이상 방치하여 압력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2.2** 공급가스압력이 3.3 kPa 초과 10 kPa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.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고, 비누물 등의 발포액으로 시험하여 용접선 · 플랜지 · 나사 등의 접합부로부터 누출이 없거나, 수주케이지의 경우 5분 이상, 압력계의 경우 24분 이상으로 하여 압력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2.3** 공급가스압력이 10 kPa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.1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고, 비누물 등의 발포액으로 시험하여 용접선 · 플랜지 · 나사 등의 접합부에 누출이 없거나, 압력계의 경우 24분 이상으로 하여 압력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2.4** 안전차단밸브가 저압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을, 중압의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.5배의 압력을 가하여 내부 누출양이 10 (mL/min) 이하인 것으로 한다.

### 3.4.1.3 내구 성능

**3.4.1.3.1** 콜과 전기점화장치는 12 000회 반복조작시험 후 가스누출이 없고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3.2** 소화안전장치 및 호스연결구는 1 000회 반복조작시험 후 가스누출이 없고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4.1.4 내진동 성능

냉난방기는 포장한 상태에서 1시간 진동시험 후 누출이 없고, 정상적인 연소상태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3.4.1.5 절연저항 성능

전기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절연저항은 1 MΩ 이상으로 한다.

### 3.4.1.6 내전압 성능

냉난방기는 내전압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 3.4.2 재료 성능(내용 없음)

### 3.4.3 작동 성능

#### 3.4.3.1 전기점화 성능

전기점화장치 시험은 10회 작동하였을 때에 8회 이상 점화되고, 연속하여 2회 이상 점화불량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4.3.2 가스소비량 성능

전가스소비량 및 각 버너의 가스소비량은 표시치의 ±10 % 이내인 것으로 한다.

#### 3.4.3.3 연소상태 성능

**3.4.3.3.1**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가능한 노(爐) 안의 압력범위 및 가스소비량 범위에서 안정한 연소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**3.4.3.3.2** 버너는 3.4.3.3.1의 안정연소 범위에서 과잉공기율이 표 3.4.3.3.2의 값과 같을 때 건조연소가스 중의 CO농도는 0.10 % 이하로 한다.

표 3.4.3.3.2 과잉공기율의 범위

| 최소가스소비량에서       | 최대가스소비량에서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0 % 이상 30 % 이하 | 10 % 이상 20 % 이하 |

## 3.5 열처리(내용 없음)

## 3.6 표시

냉난방기에는 그 냉난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한다.

#### 3.6.1 제품표시

냉난방기의 눈에 띠기 쉬운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명판 및 취급방법 표시를 부착하고, 명판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- (1) 형식호칭(모델명)
- (2) 정격냉동능력
- (3) 냉수유량( $m^3/h$  또는 L/min)
- (4) 냉수출구 또는 입구온도(°C)
- (5) 냉각수 유량( $m^3/h$  또는 L/min)
- (6) 냉각수 입구온도 또는 출구온도(°C)
- (7) 난방능력(kW)

- (8) 온수유량( $m^3/h$  또는  $L/min$ )
- (9) 온수출구 또는 입구온도( $^{\circ}C$ )
- (10) 가스소비량(kW) 또는 최대연소량(고위발열량 기준)
- (10-1) 냉방 시
- (10-2) 난방 시
- (11) 사용가스량(도시가스용은 사용가능한 가스그룹)
- (12) 사용가스압력범위(kPa)
- (13) 정격전압, 정격소비전력, 정격주파수
- (14)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
- (15) 제조연월일
- (16) 품질보증기간
- (17) 용도
- (18) 제조자명이나 그 약호(수입품은 판매자명)
- (19) A/S 연락처

### 3.6.2 합격표시

냉난방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냉난방기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합격표시를 한다.

3.6.2.1 합격표시는 그림 3.6.2.1과 같이한다. <개정 12.6.2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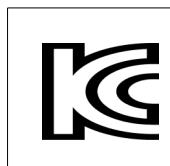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6.2.1 합격표시

3.6.2.2 합격표시의 크기는 가로 30mm, 세로 30mm로 한다.

3.6.2.3 합격표시의 색상은 노란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한다.

3.6.2.4 일관공정으로 냉난방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.

### 3.6.3 설명서 첨부

냉난방기에는 그 냉난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급설명서(시공방법을 포함한다)를 첨부한다.

## 4. 검사기준

### 4.1 검사종류

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냉난방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냉난방기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냉난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냉난방기의 성능을 확인·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# 4.1.2.1 설계단계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
- (2) 가스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
- (3)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이 변경된 경우
- (4)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

##### 4.1.2.2 생산단계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냉난방기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표 4.1.2.2에 따른 제품확인검사·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

표 4.1.2.2 생산단계검사의 종류·단위 및 주기

| 검사의 종류 |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성항목   | 검사단위 | 주기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제품확인검사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<br>이외 품목            | 정기품질검사 | 형식   | 2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상시샘플검사 | 형식   | 신청 시마다    |
| 생산공정검사 | 제조공정·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| 정기품질검사 | 형식   | 3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공정확인심사 | 품목   | 3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수시품질검사 | 대표형식 | 1년에 2회 이상 |

|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종합공정검사 | 공정 전체(설계·제조·자체검사)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|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| 품목   | 6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대표형식 | 1년에 1회 이상 |

#### 4.1.2.2.1 제품확인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와 상시샘플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 이 경우 상시샘플검사는 정기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실시한다.
- (2) (1)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형식은 2개월에 1회 정기품질검사를 받는다. 다만, 월 20대 이하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품질검사를 생략한다.
- (3) (1)에 따라 제품의 형식은 검사신청 시마다 상시샘플검사를 실시한다.

#### 4.1.2.2.2 생산공정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·공정확인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공정확인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- (3) 수시품질검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4)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안의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(5) 생산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4.1.2.2.3 종합공정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- (3)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4)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안의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(5)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

#### 4.2.1 심사 신청

가스용품 제조자가 부록A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

#### 4.2.2 심사 방법

심사는 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, 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4.4.2.2.2(5)에 따른 재공정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.

#### 4.2.2.1 신규·불합격 또는 재공정검사 업소 심사

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, 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4.4.2.2.2(5)에 따른 재공정검사를 신청하는 자(이하 “공정검사 신청자”라 한다)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기준은 부록 A에 따른다.

#### 4.2.2.2 정기 심사

3개월에 1회 하는 공정확인심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경우에는 주기 내의 변경사항, 공정관리, 자체검사 및 합격표시 활용 등 부록 A에서 정한 품질시스템의 유지 상태를 심사한다.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의 심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**4.2.2.2.1**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
**4.2.2.2.2**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
**4.2.2.2.3**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
**4.2.2.2.4**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중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.

**4.2.2.2.5**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4.2.3 판정위원회

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결과 합·부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판정위원회를 둔다.

**4.2.3.1**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4.2.3.2** 위원은 가스안전이나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운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**4.2.3.3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4.3 검사항목

####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냉난방기의 제조시설 검사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
(1) 2.1에 따른 제조설비 적합 여부

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적합 여부

####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냉난방기에 대한 검사는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##### 4.3.2.1 설계단계검사

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설계단계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이 성능을 인증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3.1에 따른 재료 적합 여부
- (2) 3.2에 따른 구조 및 치수 적합 여부
- (3) 3.3에 따른 장치 적합 여부
- (4) 3.4에 따른 성능 적합 여부
- (5) 3.6에 따른 표시 적합 여부

##### 4.3.2.2 생산단계검사

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생산단계검사의 검사종류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# 4.3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- (1-1) 3.2에 따른 구조의 적합 여부
  - (1-2) 3.4.1.2에 따른 가스통로의 기밀 성능의 적합 여부
  - (1-3) 3.4.3.3에 따른 무풍상태의 연소상태 성능(연속소음 및 소화소음 제외)의 적합 여부
  - (1-4) 3.4.3.1에 따른 전기점화 성능(무풍상태)의 적합 여부
  - (1-5) 3.5.4에 따른 안전장치작동 성능의 적합 여부
  - (1-6) 3.4.1.5에 따른 절연저항 성능의 적합 여부
  - (1-7) 3.4.1.6에 따른 내전압 성능의 적합 여부
- (2) 상시샘플검사
  - (2-1) 3.4.1.2에 따른 가스통로의 기밀 성능의 적합 여부
  - (2-2) 3.6에 따른 표시의 적합 여부
  - (2-3) 4.5.4에 따른 연소상태 성능(무풍상태:CO, 연속소음 및 소화소음 제외)의 적합 여부

###### 4.3.2.2.2 생산공정검사

#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정기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.

###### (2) 공정확인심사

공정확인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에 따른다.

###### (3) 수시품질검사

수시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.

#### 4.3.2.2.3 종합공정검사

##### (1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

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에 따른다.

##### (2) 수시품질검사

수시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.

표 4.3.2.2 공정확인심사 및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항목

| 구분   | 심사항목      | 적용 여부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| 공정확인심사  |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|
| 일반사항 | 조직        | 적정한 기술적 · 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품질시스템     |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문서관리      | 적정한 문서관리시스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인적자원      |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설계   | 시설 · 장비   | 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설계 · 개발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템 확보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잠재적 고장영향분석,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결과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설계 · 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제조   | 구매        |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생산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실행 증명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예방 및 예측 보전, 생산차공구 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자체검사 | 검사방법 및 절차 |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차 유지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 수준유지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측정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소급성 유지,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| ○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설계단계검사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(1회/년) 실행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설계단계검사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(2회/년) 실행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
|         | 검사기관의 운영요건(ISO 17020)에 준하는 시스템의 운영 |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
| 의무      | 시정 및 예방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|         | 내부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| 합격표시    |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|         | 합격표시 제작에 관하여 별도로 문서화된 규정 유지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
| 교육      |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| 안전관리    |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제품 유통 방지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| 그 밖의 사항 |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<input type="radio"/> |

## 4.4 검사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4.3.1에 따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#### 4.4.2.1 설계단계검사

설계단계검사 방법은 검사항목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#### 4.4.2.2 생산단계검사

생산단계검사 방법은 검사항목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른다.

##### 4.4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샘플링

- (1-1) 정기품질검사 시료 수는 2개로 한다.
- (1-2) 상시샘플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(1-2-1)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 제품을 1조로 한다.
  - (1-2-2) (1-2-1)에 따라 형성된 조에서 채취하는 시료 수는 표 4.4.2.2.1(1)과 같이한다.

표 4.4.2.2.1(1)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

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조를<br>형성하는 수 | 10개 이하 | 11개 이상<br>100개 이하 | 101개 이상<br>300개 이하 | 301개 이상<br>700개 이하 | 701개 이상<br>3000개 이하 | 3001개 이상          |
| 시료 수          | 전수     | 10개 이상            | 15개 이상             | 20개 이상             | 25개 이상              | 검사신청<br>수량의 1/100 |

## (2) 합부판정

(2-1)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와 상시샘플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) 상시샘플검사는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여 합격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합격한 것으로 하고, 불합격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4.4.2.2.2 공정검사

#### (1) 샘플링

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의 정기품질검사 및 수시품질검사 시료 수는 2개로 한다.

#### (2) 합부판정

##### (2-1) 공정검사 신청자 합부판정

공정검사 신청자에 대한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합·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한다.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결정전까지는 종전의 검사결과를 따른다.

(2-1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품질검사와 공정확인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(2-1-2) 판정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하여 합·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심의결과 품질시스템의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을 할 수 있다.

(2-1-3) 형식별 정기품질검사와 품목에 대한 공정확인심사에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생산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1-4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종합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## (2-2) 정기 공정검사 합부판정

3개월에 1회 하는 생산공정검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공정검사에 대한 합·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.

(2-2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하여 합·부를 결정한다.

(2-2-2) 형식별 정기품질검사와 품목에 대한 공정확인심사에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생산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-3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종합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## (2-3) 수시품질검사 합부판정

수시품질검사에 대한 합·부 판정은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결정한다.

##### (3) 검사결과 처리

###### (3-1) 공정검사 신청자의 검사결과 처리

공정검사 신청자에 대한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다.

(3-1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의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.

(3-1-2) 심사에 조건부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(3-1-2-1)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품질시스템 보완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.

(3-1-2-2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출된 보완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합격처리 한다.

(3-1-2-3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조건부 합격판정을 받은 신청자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
(3-1-3)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(3-1-3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불합격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1-3-2)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(3-1-3-3) 종합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생산공정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.

### (3-2) 정기 공정검사 결과처리

3개월에 1회 하는 생산공정검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공정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.

(3-2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합격을 통보한다.

(3-2-2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불합격내용을 통보 후 합격통지서를 회수하고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2-3) 검사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(3-3) 수시품질검사 결과처리

수시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.

(3-3-1) 수시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2차 수시품질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2) 2차 수시품질검사는 채취하는 시료수를 2배로 하여 실시한다.

(3-3-3) 2차 수시품질검사에도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 후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하고, 해당 형식에 대하여 수집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4)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(4) 휴지 또는 검사의 종류 변경

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### (5) 재공정검사

규칙 별표 7제3호나목에 따라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(5-1)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
(5-2) 품목을 추가한 경우

(5-3)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. 다만,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.

## 4.5 그 밖의 검사기준

#### 4.5.1 수입품 검사

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검사에 필요한 장비·재료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.

#### 4.5.2 검사일부 생략

**4.5.2.1**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가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**4.5.2.2**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(해당 없음)

#### 4.5.4 세부검사기준

그 밖의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록 A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

| 1. 서문    |  |
|----------|--|
|          | <p>가. 이 기준은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2)나)에 따라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통해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.</p> <p>나. 이 기준은 일반사항, 설계, 제조, 자체검사 및 의무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, 가스용품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이 공정확인심사나 종합적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.</p> |
| 2. 일반사항  |  |
| 가. 조직    |  |
| (1)      | 고객 및 법적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·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.  |
| (2)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공정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3)      | 설계 과정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장형태 등을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연구·개발 조직을 보유해야 한다.  |
| 【종합】     | (가) 연구·개발책임자 및 인력  |
|          | (나)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적정 설비 및 장비  |
| 나. 품질시스템 |  |
| (1)      | 제조업소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수립,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|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,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,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| 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수립  |
|          | (나) 경영검토(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제품의 개선)의 수행  |
| 다. 문서관리  |  |
| (1)      | 품질시스템의 문서화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|
|          | (나) 품질매뉴얼  |
|          | (다) 이 기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 |
| (2)      |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문서의 승인, 검토, 갱신 및 재승인   |
|          | (나) 문서의 식별(최신본, 외부출처 문서 등) 및 배포 관리   |
|          | (다) 효력 상실 문서의 오사용 방지   |
| (3)      | 기록은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의 식별, 보관, 보호, 검색,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.  |
| 라. 인적자원  |  |
| (1)     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, 교육훈련, 숙련도 및 경력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제조업소는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인원에 대한 적격성 결정 수행   |
|          | (나)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공 및 효과성 평가  |
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(다) 적격성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의 설계·개발에 책임을 가진 인원의 경우 설계·개발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적용할 도구 및 기법에 숙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<b>마. 시설 및 장비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업무환경을 결정,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.<br>(가) 건물, 업무장소 및 유틸리티<br>(나) 프로세스장비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<br>(다) 지원서비스(운송, 통신 등)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| 제품 및 제조공정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현장을 정돈,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설계, 개발 및 제조활동에 표현되어야 한다.   |
| <b>3. 설계</b>      |  |
| <b>가. 설계 및 개발</b> |  |
| (1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 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 및 신뢰성결과<br>(나) 제품의 특성, 필요시 시방서<br>(다) 해당되는 경우, 제품의 실수방지를 위한 조치<br>(라) 도면 또는 수학적 기초데이터가 포함된 제품의 정의<br>(마) 제품설계검토 결과    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공정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도면 및 필요시 시방서<br>(나) 제조공정 흐름도 및 레이아웃<br>(다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 결과<br>(라) 관리계획서<br>(마) 작업지침서<br>(바) 공정승인합격기준<br>(사) 제품/공정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출 및 피드백 방법 |
| (4)<br>【종합】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타당성 확인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쉽게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, 검증,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.   |
| <b>4. 제조</b>      |  |
| <b>가. 구매</b>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|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|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선정기준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공급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 관리방법은 달라져야 한다.   |
| <b>나. 생산</b>      |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조건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<br>(가)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사용<br>(나) 적절한 장비의 사용<br>(다) 측정의 실행<br>(라)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의 사용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 및 추적성과 관련하여 제품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작업준비는 작업의 첫 가동, 자재의 교체 또는 작업변경 시마다 검증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  | 각 공정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은 양산 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 산포, 공정능력 같은 기본적 개념은 조직 전반에서 이용되어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품, 제조공정에서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를 고려한 관리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.   |
| (7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위하여 문서화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지침서는 작업장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.   |
| (8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주요공정을 파악하고 기계/장비/치공구의 보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계획된 종체적 예방보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. 시스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계획된 보전 활동<br>(나) 장비, 치공구 및 게이지의 포장 및 보전<br>(다) 주요 제조장비에 대한 교체용 부품의 가용성<br>(라) 보전 활동의 문서화, 평가 및 개선<br>(바) 생산, 수리 또는 폐기와 같은 상태를 규정한 식별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5. 자체검사</b>      |  |
| <b>가. 검사방법 및 절차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수행해야 할 검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. 이는 제품생산공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검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한다. 기록에는 제품의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이 나타나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계수 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이어야 한다.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측정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.<br>(가)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.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<br>(나)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<br>(다) 측정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<br>(라) 취급,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, 열화로부터 보호 |
| (5)<br>【주기】         |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보정의 형태로 활용되어져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형태의 측정 및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측정시스템의 변동을 분석하여야 한다.   |
| (7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1년에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전체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【주기】</b>         | 한다.  |
| (8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1년에 2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전체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검사는 KS Q 17020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. <개정 14.11.17>   |
| (9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의 시험실은 다음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시스템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.<br>가) 인원, 장비 및 시설의 적격성<br>나) 시험을 관련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<br>다) 외부시험실은 KS Q ISO IEC 17025 또는 같은 수준의 인정기관 <개정 14.11.17>   |
| <b>나. 시정 및 예방조치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부적합품 및 의심스런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<br>(가) 부적합의 검토 (고객불만 포함)<br>(나) 시정조치의 결정, 실행 및 기록  |
| (3)                 | 품질방침, 품질목표, 심사결과, 데이터분석, 시정조치, 예방조치 및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 |
| (4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<b>다. 내부감사</b>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        | 감사의 계획, 수행, 감사의 독립성 보장,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.   |
| <b>6. 의무</b>        |  |
| <b>가. 합격표시</b>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합격표시(증명서나 각인)에 대한 관리규정을 문서화해야 하며, 합격표시의 수령·사용·보관, 폐기 등에 관한 기록은 즉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합격표시(증명서나 각인)는 반드시 권한 있는 직원만이 취급<br>(나) 합격표시는 반드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/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<br>(다) 합격표시의 사용내용에 대한 기록<br>(라) 합격표시의 오용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<br>(마) 합격표시는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 |
| (2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합격표시 제작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하며 합격표시의 제작·변경에 대한 사항은 전부 기록되어야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<b>나. 교육</b> 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하는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교육을 1인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3년을 주기로 영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1인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.  |
| <b>다. 안전관리</b>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1년간 제품결합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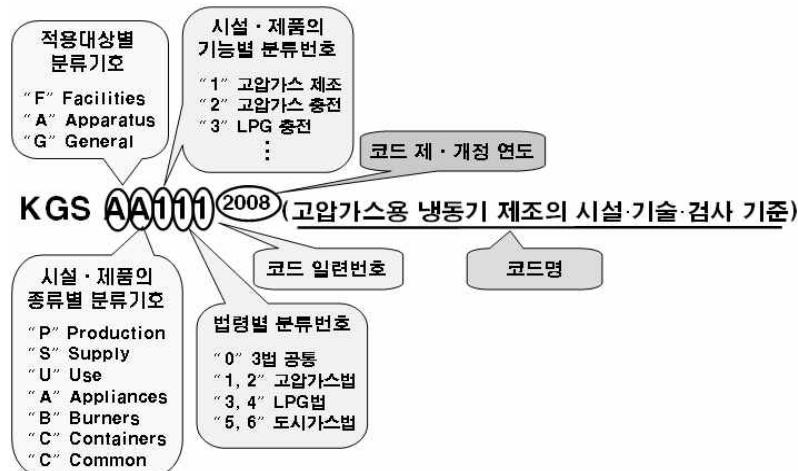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한다.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3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
| <b>라. 그 밖의 사항</b> |  |
| (1)               |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| (2)               |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|

- 비고 1. 【종합】은 종합공정검사 대상에만 적용하는 기준  
2. 【주기】는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  
3. 표시가 없는 조항은 공정확인심사나 종합적품질관리체계심사의 공통 기준

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분류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품(A)<br>(Apparatus)  | 기구(A)<br>(Appliances) | AA1xx | 냉동장치류    | 제조·충전<br>(P)<br>(Production) | FP1xx | 고압가스 제조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2xx | 배관장치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2xx | 고압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3xx | 밸브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3xx | LP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4xx | 압력조정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4xx |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5xx | 호스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5xx |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6xx | 경보차단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6xx | 도시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소기(B)<br>(Burners)   | AA9xx | 기타 기구류   | 시설(F)<br>(Facilities)        | FS1xx | 고압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1xx | 보일러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2xx | LP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2xx | 히터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3xx |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3xx | 렌지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4xx |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9xx | 기타 연소기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5xx |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|
| 용기(C)<br>(Containers) | 탱크류                   | AC1xx | 탱크류      | 판매·공급<br>(S)<br>(Supply)     | FU1xx | 고압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2xx | 실린더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2xx | 고압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3xx | 캔류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3xx | LP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4xx | 복합재료 용기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4xx | LP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AC9xx | 기타 용기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5xx | 도시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저장·사용<br>(U)<br>(Use)        | GC1xx | 기본사항         |
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C2xx | 공통사항         |

KGS AB134 2014

